

③ 부채 / 채무 / 채권

③-1 통합부채현황

■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.

▶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('25.12. 예정)

③-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

■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(퇴직금, 미지급금, 보관금 등)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, '3-6. 지자체 채무 현황'의 지방채무와 '3-3. 지방공기업 부채' 중 직영기업(공기업 특별회계)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남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2023년	2024년	증 감	비고
자산(A)	11,410	11,625	215	
부채(B)	202	183	△19	
자산대비부채비율 (B/A*100)	1.77	1.57	△0.20	

- ▶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
- ▶ 부 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
 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 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 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
- ▶ 자 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
우리 남구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1.57%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,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약 19억 감소하였습니다.

③-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

- 우리 남구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 지방공기업 부채 중 ‘직영기업’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‘공기업 특별회계’의 부채로서 ‘3-2.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(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)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	2023년				2024년			
		자산 (A)	부채 (B)	자본 (순자산) (C)	부채비율 (B/C)×100	자산 (A)	부채 (B)	자본 (순자산) (C)	부채비율 (B/C)×100
합 계		10	5	5	100	13	8	5	160
공단	소 계	10	5	5	100	13	8	5	160
	남구시설관리공단	10	5	5	100	13	8	5	160

우리 남구의 공기업인 남구시설관리공단의 2024년 부채는 8억원 정도로, 작년 대비 3억원 가량 증가한 금액입니다. 이는 미지급금, 미지급비용, 예수금 등의 증가에 기인합니다.

③-4 출자·출연기관 부채 현황

- 우리 남구의 출자·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	2023년				2024년			
		자산 (A)	부채 (B)	자본 (순자산) (C)	부채비율 (B/C)×100	자산 (A)	부채 (B)	자본 (순자산) (C)	부채비율 (B/C)×100
합 계		27	0	27	0	27	0	27	0
출연 기관	소 계	27	0	27	0	27	0	27	0
	남구장학회	27	0	27	0	27	0	27	0

우리 남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없습니다.

③-5 우발부채 현황

- 우발부채는 **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**를 의미하며,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▶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('25.12. 예정)

③-6 지자체 채무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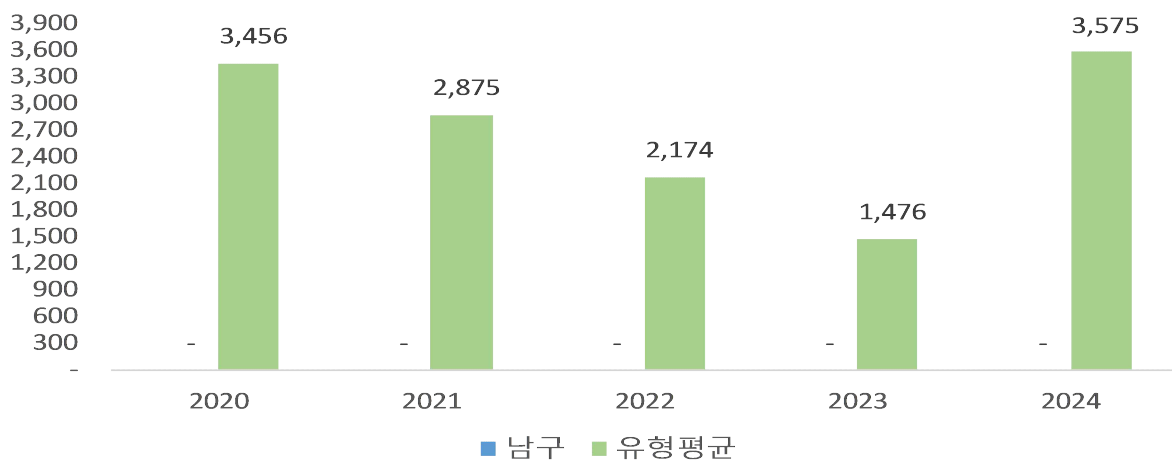
- 지방(자치단체)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(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). 우리 남구는 채무가 없습니다.

❖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

(단위 : 억원, 명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20	2021	2022	2023	2024
채무현황	0	0	0	0	0
인구수	267,731	262,069	256,333	254,185	254,498
주민 1인당채무 (천원)	0	0	0	0	0

주민 1인당 채무 규모



③-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

-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(행안부장관→지자체)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(지자체→행안부장관)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,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.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20	2021	2022	2023	2024
지방채발행한도액(A)	138	162	183	206	234
발행액(B)	0	0	0	0	0
발행비율(B/A*100)	0	0	0	0	0

- ▶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(7.1, 행안부장관→자치단체)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*한 기본한도액(7.15, 자치단체→행안부장관)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,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

* 지방재정법 개정('20.4.)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

- ▶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

* 별도한도액 = 의무매출채권(지역개발, 도시철도) + 차환채 +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

** 차환채 =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서 '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

우리 남구는 2010년 이후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.

③-8 일시차입금 현황

-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. 우리 남구는 일시차입금이 없습니다.

③-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

-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(BTL, BTO 등)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. 우리 남구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.

③-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·이행현황

-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'2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, '2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, '24~'28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▶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('25.12. 예정)

③-11 보증채무 현황

-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남구가 202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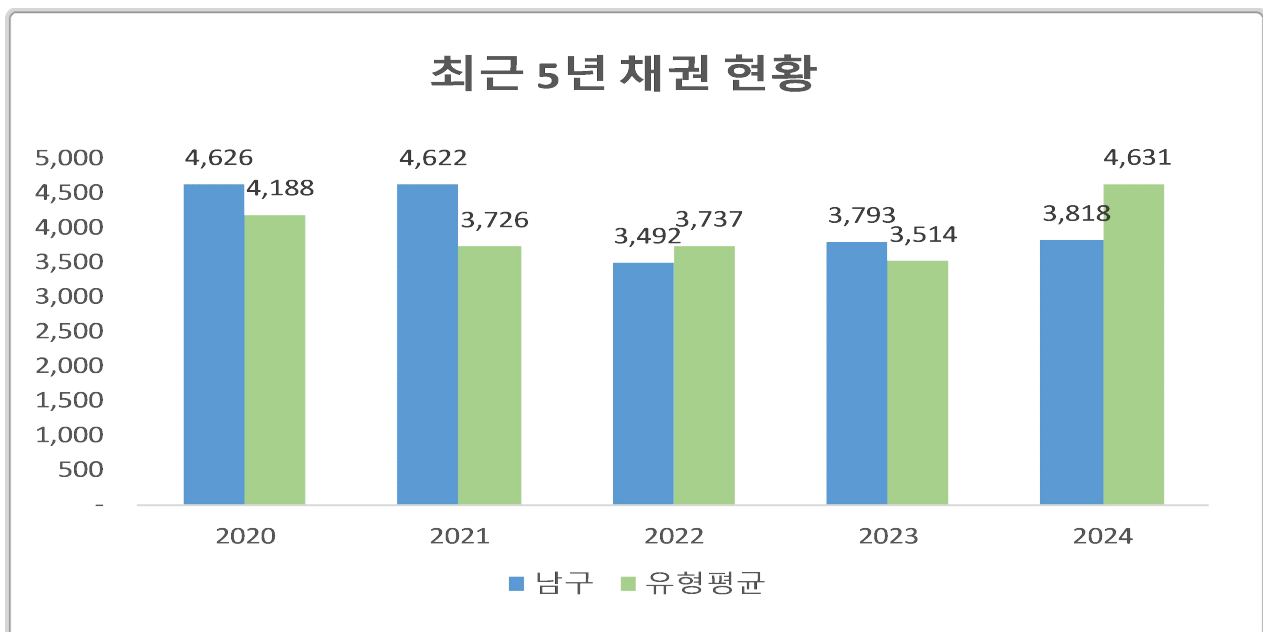
③-12 채권 현황

-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(융자)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. 우리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23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'24년도 현재액 (A+B)
			계 (B=C-D)	발생액(C)	소멸액(D)	
합 계		3,796	22	34	12	3,818
일 반 회 계		2,888	0	0	0	2,888
특별회계	소 계	648	22	34	12	670
	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648	22	34	12	670
기금회계	소 계	260	0	0	0	260
	사회복지기금	260	0	0	0	260

- ▶ '24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



- ▶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